

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(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) 의견청취(안)

의안 번호	194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5월 2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·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「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」을 수립하고,
- 나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(안정적 주택공급) 시민 모두가 주거 걱정 없는 행복한 주거공간 마련
- 정비사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역지정 요건 완화
 - ▶ 접도율 도로요건 및 고도·경관지구 등 기준 완화
 - 노후·과밀 주거지 정비사업 여건 개선
 - ▶ 현황용적률 인정 및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, 공공기여 비율 완화
 -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체계 구축
 - ▶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(패스트트랙) 도입, 통합심의 본격 추진
 - 노후·저층 주거지의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(휴먼타운 2.0)
 - ▶ 건축기준 완화, 기반시설 확보, 금융지원 확대, 모아센터 설치

나. (주거공간 대개조) 세계적 도시, 서울에 걸맞은 도시 매력 증진

-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단지 조성

▶ 생활공유가로, 담장 없는 단지 계획 등

- 기반시설 입체복합을 통한 효율적 공간 활용

▶ 공원, 공공시설 등 중복·입체적·공간적 범위 결정 적극 적용

- 디자인 혁신을 통한 매력 있는 주거공간 조성

▶ 창의혁신 우수디자인 및 수변·녹지 연계 특화디자인 적용,
기부채납 시설 설계공모 의무화 등

-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주택단지 조성

▶ 친환경, 도심항공교통, 미래전략용지 확보, BF 등 로봇친화환경,
장수명주택 등

3. 추진경위

○ '19.05.~24.05. : 2030 기본계획(안) 수립

- 2025 기본계획 변경(2회 : '21.9.23. / '24.2.15.)

▶ 주거정비지수제 폐지, 신속통합기획 도입, 주민동의율 변경, 반대동의율 신설

○ '24.05.30.~06.13. :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(기관) 협의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임

※ 작성자

- (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)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 유태운(☎ 2133-7206)
- (재건축사업)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재건축정책팀 박슬기(☎ 2133-7137)
- (주거환경개선사업)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정책팀 유성완(☎ 2133-7250)